

『제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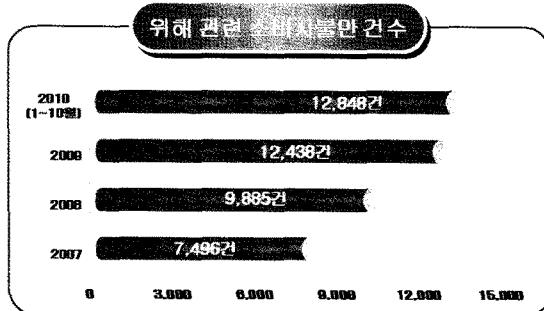
배진한 연구사
(자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제정 개요

저가 수입제품 및 불법·불량 제품 등 안전취약 제품의 국내 시장 유통으로 제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기대하는 요구수준 또한 증가되고 있어 제품으로 인한 불만·불평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 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제품안전관리 체계는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유통·사용 단계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규정은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리콜, 사고제품의 조사 및 언론 공표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제품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시도에 따라 집행이 다소 소극적인 경우도 있었으며 통합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2010.2.4)되었고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 ◎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08.11.14)
- ◎ 국회 본회의 통과(‘09.12.30)
- ◎ 「제품안전기본법」제정 공포(‘10.2.4)
- ◎ 「제품안전기본법」시행(‘11.2.5)

● 국제동향

미국은 오바마 정부들이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제정을 통해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제3자 시험·인증을 받아야만 미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수입물품 강화를 위해 48개 세관에 100명의 필드조사자를 배치하고, 국경수비대와의 협력을 통해 세관에서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와의 MOU를 통해 미국에서 적발된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강화를 위해 ‘07년 440명이었던 직원을 ‘11년 현재 57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07년 6천 2백만불이었던 예산은 ‘11년 현재 1억2천억불로 약 2배 이상 증액시켰다.



제품안전 기고문

호주의 경우에도 분야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제품관련 법령을 소비자제품안전법으로 통합하며 제품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호주는 보고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미국 및 캐나다 등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국제리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및 EU 등 선진국들은 제품안전정책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제품안전담당공무원회의(ICPSC)를 통해 리콜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제조물이력추적제도 추진 등 국제적인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 미국리콜: '08년 564건, '09년 466건, '10년 402건

* 일본리콜: '08년 106건, '09년 94건, '10년 103건

* EU의 위해제품통보: '08년 1,866건, '09년 1,993건,
'10년 2,244건

제품안전기본법



서 리콜한 제품 및 기타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지난 2월 5일 본격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을 통해 그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외국에

동 법의 주요골자로는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정부가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사고의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사고조사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제품안전 취약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등 제품안전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

- ①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
- ②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실시
- ③ 경미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
- ④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 명령과 동시에 사실을 언론에 공표
- ⑤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의무 규정
- ⑥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조치후 비용청구
- ⑦ 한국제품안전협회 설립, R&D 지원 볍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체계 정비

통해 제품안전에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업들은 제품생산시 보다 안전한 제품의 공급에 더 옥더 힘써야 할 것이며,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리콜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시중

● 정책방향 및 후속조치

지금까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 정기검사제도 등을 통해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위해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리콜이 이루어지도록 주력할 계획으로 필요시 리콜명령 및 언론공표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제품안전이 확보되도록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불량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적발된 업체는 단호하게 조치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법령 후속조치로, 우선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12개의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였으며, 리콜 권고 및 명령의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설립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망 구축을